



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1차 복지환경위원회

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3. 16.

복지환경위원회

전문위원 조공선

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「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및 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,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(안 제7조, 제9조, 제17조, 제20조의3, 제35조)
- 나. 별표 서식 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분 삭제 (안 별표 4, 5)
- 다. 이불전용 수거봉투 조례 반영 (안 별표 4, 5, 6)
- 라.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서·배부대장 추가 (안 제7조, 별지 제3호, 제4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부서협의결과
 - 비용추계 : 미첨부
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나. 입법예고 결과

- 입법예고 기간 : 2025. 12. 24. ~ 2026. 1. 13. / 20일간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 / 의견제출 0건

5. 검토의견

□ 안전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,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서 및 배부대장 서식 신설,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관련 사항을 별도 조례로 이관함에 따른 별표 정비, 이불전용 수거봉투 규격 및 가격 반영 등 종량제봉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
-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,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초과 판매 시 지정취소 기준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를 함께 반영하는 등 폐기물 관리 제도의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, 종량제봉투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